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0. 29 선고 2023가단652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9. 24.

판결 선고 2024. 10. 29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. 6. 7. 매매를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 원고의 배우자인 고

C(이하 '고인'이라 한다)는 1978. 6. 7.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D대 232.7㎡와 그 지상의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. 고인은 위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. 원고는 2019. 10. 21. 고인으로부터 위 D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. 고인은 2020. 1. 23. 사망하였다. 그러므로 피고는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. 6. 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2. 판단

갑 제1호증의 2,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고인과 E, 그리고 피고가 1978. 6. 7. 위 D 토지에 대한 매도증서를 작성한 사실, 고인과 E가 1978. 6. 8. 위 D 토지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1978. 6. 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고인이 1985. 5. 23. 위 D 토지 중 1/2 지분(E 소유 부분)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'고인과 피고가 1978. 6. 7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'는 명제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 이러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.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1978. 6. 7.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항용남

별지